

공탁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1. 의결주문

공탁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개정이유

- 전자서명수단을 대법원규칙으로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한 전자서명수단만을 이용하도록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는 「전자서명법」 제6조제2항이 시행됨에 따라, 전자신청 시 사용할 수 있는 전자서명수단을 특정하기 위함

3. 주요내용

- 전자신청을 할 때, 전자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인증서 중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인증서를 사용하도록 함(안 제68조제2호 및 제3호)

4. 공탁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붙임과 같음

5. 신·구 조문 대비표

붙임과 같음

공탁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공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8조제2호 중 “것”을 “것으로서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인증서를 이용한 것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“것을”을 “것으로서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인증서를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접수되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68조(용어의 정의)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(생 략)</p> <p>2. “전자서명”이란 「전자서명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(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<u>것</u>을 말한다)을 말한다.</p> <p>3. “인증서”란 「전자서명법」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(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<u>것</u>을 말한다)를 말한다.</p> <p>4. 5. (생 략)</p>	<p>제68조(용어의 정의) ----- ----- 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----- ----- <u>것으로서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인증서를 이용한 것</u>-----.</p> <p>3. ----- ----- ----- <u>것으로서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인증서를</u> -----.</p> <p>4. 5. (현행과 같음)</p>

<의안 소관 부서명>

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공탁법인심의담당실	
연락처	(02) 3480-1877